

「easy-one 외화송금서비스」 이용약관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: 2019. 5. 27

2.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제 2조(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)</p> <p>①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 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</p> <p>1. 증여성 송금 : 1일 누계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, 연간 미화5만불 상당액 이하, 다만, 건당 미화3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 2조(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)</p> <p>①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 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</p> <p>1. 증여성 송금 : 1일 누계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, 연간 미화5만불 상당액 이하, 다만, 건당 미화5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</p> <p>2. ~ 4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	<p>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 반영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